

유아교육·보육기관평가 비교: 영국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¹⁾

장혜진 부연구위원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평가를 하는 것은 기관의 질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높다. 영국과 뉴질랜드는 공통적으로 독립적인 평가기관을 설립하여 평가자의 자격기준을 설정하여 양성하고 있다. 평가방법 측면에서 두 국가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영국은 영유아기기본교육단계의 준수여부를 주로 평가하고, 뉴질랜드에서는 지표를 하나의 자원으로 인식하여 기관에 따라 다양한 면을 고려하고자 한다. 평가결과는 두 국가에서 모두 등급으로 공개하며 특히 영국에서는 저조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국제비교를 통해 추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 기관 평가의 본질적인 목적과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1. 들어가며

사회적으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비취업모의 경우에도 가정 내 양육보다는 기관을 통한 유아교육·보육을 선호하고 있다.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공적책무성이 높아져 국가의 공적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영유아 부모나 학계, 국가 모두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많은 선진국은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OECD(2012/2013)²⁾는 기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질 제고의 목적 및 규제 설정, 교육과정 및 기준의 설계와 실행, 교사자격 및 연수, 가족 및 지역사회의 참여, 연구 및 모니터링의 향상으로 나누어 관련 정책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기관의 질 제고를 위해 모든 측면이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기관 대상 모니터링은 비

1) 장혜진·송신영(2014). 유아교육·보육 질 관리 국제비교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내용 중 영국과 뉴질랜드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였음.

2) OECD(2012/2013). Starting strong III: A quality toolbox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신동주, 장혜진, 이경옥 역).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서울: 덕성여자대학교.

교적 최근 정책이며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실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관을 평가하는 것이 해당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대표적인 예이다.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도입한 후에 기관의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고 교재·교구 확보율이 높아지는 등 현상이 개선되고 교사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교수효능감이나 전문성 향상 등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었지만³⁾, 미평가자의 자격기준, 선정 및 관리, 평가 이후의 절차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평가나 평가인증을 통해 교육과정의 운영이 획일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보육 기관평가(인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평가에 대한 관점이나 방법을 알아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관평가·평가인증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유아교육·보육 질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국가나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Sheridan & Schuster, 2001; Pense & Moss, 1994, Ceglowski & Bacigalupa, 2002에서 재 인용)⁴⁾ 해외 사례의 차이를 지양해야 하나 평가의 목적, 방법, 대상, 결과활용 등에 관한 해외 자료는 우리나라 유아교육·보육기관 평가를 개

선하는 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기관평가가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평가·평가인증이 가진 제한점을 극복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영국과 뉴질랜드의 유아교육·보육 기관평가를 비교하였다. 유아교육·보육 기관평가에 대한 국제비교는 기관 평가에 대한 시야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보육 질 관리, 특히 기관평가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영국과 뉴질랜드의 유아교육·보육 기관평가 국제비교⁵⁾

가. 평가기관

1) 영국

영국의 영유아기관 평가는 교육표준청 (Ofsted,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 and Skills)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기관은 평가를 담당하고 있지만 규제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규제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 등록 업무를 담당, 둘째, 등록된 기관이 법적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 셋째, 등록을 위한 요구조건이나 등

3) 서문희·김은영·송신영(2009). 보육교사 인식을 통해 본 평가인증의 효과. 육아정책연구소, 3(2), 1-22.; 이미화·서문희·최윤경·엄지원(2012).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발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4) Sheridan, S., & Schuster, K. M. (2001). Evaluations of pedagogical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 cros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16(1), 109-124.; Pence, A., & Moss, P. (1994). Towards an inclusionary approach in defining quality. In: Moss, P., and Pence, A. (eds.). Valuing Quality in Early Childhood Services: New Approaches to Defining Quality.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Ceglowski, D., & Bacigalupa, C. (2002). Four perspectives on child care qua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0(2), 87-92.

5) 영국의 경우 Ofsted 홈페이지(<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ofsted>), 뉴질랜드의 경우 ERO 홈페이지(<http://ero.govt.nz/>)에 게재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음.

록 없이 운영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평가 측면에서 교육표준청은 독립적이며 공정한 기관으로 평가결과를 국회에 직접 보고한다. 영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나 모든 나이의 학습자에게 교육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기관을 평가하고(inspect) 규제한다. 여기에는 유아교육·보육시설부터 유아·가족 재관지원서비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사 양성, 직업교육, 성인 및 지역사회 학습, 교도소에서의 교육 및 훈련 등이 포함된다. 영유아 대상 상담서비스나, 고아, 영유아 보호에 관련된 서비스도 평가한다.

교육표준청(Ofsted)에서는 2가지 종류의 등록 시스템(Childcare and Early Years register)을 가지고 있으며 입학 직전 학급(reception class)을 시작하기 전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5가지의 평가체계(maintained schools, independent school, Early Years Register, Childcare Register, and Children's centres)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보육도우미에 대한 등록을 시작하고 2015년 1월부터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현재 6가지 종류의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다.

2)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 영유아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부처와 독립적인 기관인 교육평가청(ERO, Educational Review Office)이 맡고 있다. 이 기관은 1989년 당시 State Sector Act 1988에 의해 설립된 정부 기관이며, 학교나 보육 시설 등의 교육서비스 분야에서 정부가 평가기준을 마

련하여 해당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교육의 질을 평가한다.

뉴질랜드 교육평가청(ERO)이 평가하는 교육 기관은 영유아기관 뿐 아니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교육평가청은 각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적, 맥락적 영향을 중요시 하여 다양성을 인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평가지표 개발 역시 교육평가청이 주관하여 개발하였으며, 뉴질랜드와 각 국의 연구 결과와 자체적인 경험을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교육평가청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은 크게 북부 지역, 중앙 지역, 남부 지역, 마오리 지역으로 네 개로 나누어지는데 이 지역에서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자는 총 150명 내외로 일 년에 2,000개가량의 유아교육·보육기관과 학교를 평가한다.

나. 평가절차

1) 영국

영국에서는 평가를 위한 기간 내 최소한 1번은 기관을 평가한다. 다음 평가 기간은 2016년 7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으로 지금까지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은 이 기간 안에 최소한 1번 평가를 받게 된다. 새로 등록한 기관은 대개 등록한지 6-7개월 안에 평가를 받는다. 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고지된 적이 있거나 위험평가에서 평가를 먼저 해야겠다고 판단된 기관이나 지난 평가에서 부적절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관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평가한다. 기본적인 평가절차는 <평가공지→자체평가→현장평가→피드백 회

〈표 1〉 영국의 기관평가 절차

평가단계	내 용
평가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에서는 평가 전에 공지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평가자가 평상시의 상황을 관찰할 수 있음. - 보육도우미(childminder)나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한하여 평가하기 며칠 전에 알려주거나 평가를 하려고 하는 날에 영유아의 기관 등원 여부나 기관 운영 여부를 확인함.
↓	
자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에서는 교육표준청의 자체평가지나 지자체가 배부한 양식이나 도구, 소속 기관의 질 보장체계 (quality assurance scheme) 등을 사용할 수 있음. - 자체평가를 완료해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평가 기간 내에 적절한 시간대나 기관에서 평소에 하는 것과 같이 자체평가를 하도록 함.
↓	
현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자는 교직원과 인터뷰를 실시함. - 평가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성인이 영유아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데 사용함. - 관찰시간은 각 연령이나 활동별로 20-30분인데 최대한 많은 연령과 활동을 관찰하도록 시간을 배정하며 영아반의 경우에는 보통 30분 이상 소요됨. - 교실에 2명 이상의 교사가 있는 경우, 합동관찰(joint observation)을 할 수 있음.
↓	
피드백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관찰이 종료될 때 평가자는 기관장이나 기관장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함께 피드백회의를 함. - 평가자는 평가에 대한 이유와 개선이 더 필요한 부분, 앞으로의 일정을 알려줌.
↓	
평가보고서 작성 및 결과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에는 피드백 회의 때 알려진 기관의 등급, 기관의 전반적인 수준과 기준에 대한 평가를 요약한 내용이 포함됨. - 평가보고서가 작성되고 나면 기관으로 보내져 결과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일반에게 공개됨.

의→평가보고서 작성 및 결과공지〉 순이며 각 단계별 사항은 다음 〈표 1〉에 정리하였다.

2) 뉴질랜드

뉴질랜드 기관평가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자체평가로 볼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 자체평가를 방법론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뉴질랜드의 자체평가가 갖고 있는 의미나 중요도가 차별적이다. 자체평가는 원래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려

는 목적을 지니고 있지만 뉴질랜드에서 고려하는 문제는 법이나 요구조건에 대한 부합 여부가 아니라 기관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본다. 자체평가는 체크리스트 형식이 아니라 문장에 서술식으로 답하게 되어 있다. 또한, 자체평가를 통해서 기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다. 기관평가 절차는 〈표 2〉에 정리하였듯이 〈평가 공지→자체평가→평가결과→현장평가 및 종합→평가결과에 대한 논의→

〈표 2〉 뉴질랜드의 기관평가 절차

평가단계	내용
평가 공지	- 평가는 교육평가청이 해당 영유아기관 평가를 준비하라는 내용의 서면을 보내면서 시작함. - 평가 코디네이터가 평가받는 기관을 지원함.
↓	
자체평가	- 뉴질랜드 평가의 특징적인 부분으로 현장평가 전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함. - 평가하는 내용은 법, 요구조건에 대한 부합 여부가 아니라 기관이 실제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봄.
↓	
평가설계	- 평가를 설계하는 것은 점검 기간 동안 평가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지 결정함.
↓	
현장평가 및 종합	- 평가팀은 자료 수집과 근거 제시를 위해 기본적으로 평가 지표를 활용함. - 자체평가 정보를 바탕으로 영유아기관의 장점 및 개선사항을 확인함.
↓	
평가결과에 대한 논의	- 평가팀은 기관에서 선정된 직원과 함께 점검 결과를 논의함. - 결과는 잘 수행되고 있는 분야, 점검과 향상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상당한 수준의 향상이 필요한 경우 교육평가청은 추후 단기간 내 재평가를 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함. - 평가결과에 관한 토론은 외부 점검의 결과에 책임이 있는 운영진, 교직원 그리고 관계자(부모 포함)가 참석할 수 있음.
↓	
결과보고	- 결과보고서는 현장점검 이후 20일 이내에 해당 영유아기관에 비공식 형태로 발송됨. - 'Not well placed' 결과를 받은 영유아기관은 현장점검 10일 이내로 비공식 형태의 보고서를 받게 됨. - 승인된 보고서는 기관장이 보고서를 받은 지 2주가 되는 시점에 교육평가청의 홈페이지에 공개됨.

결과보고〉 순으로 영국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평가설계나 평가결과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각 기관의 다양성을 인정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다.

다. 평가내용

1) 영국

「아동보육법 2006」에 의한 기관평가는 첫째,

해당 시설이 다양한 영유아의 욕구를 잘 충족시키는지, 둘째, 영유아의 웰빙에 기여하는 정도, 셋째, 리더십과 관리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해당 시설의 질을 평가한다.

우선 첫 번째 기준인 ‘기관이 다양한 영유아의 욕구를 얼마나 잘 충족시키는가?’는 영유아의 학습과 발달에 대한 내용으로 영유아의 출발점과 역량, 기관 이용 기간 및 빈도를 고려해 볼 때 최적의 발전을 보이는지,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또는 이후 교육단계를 위해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두 번째 영역인 영유아의 웰빙 기여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조사관은 해당 시설에서 영유아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지,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돌보고 있는지 평가한다. 세 번째 영역은 리더십과 운영 관리에 대한 내용이다. 이 영역에서 조사관은 영유아기 기본교육단계(EYFS, Early Years Foundation Stage)에서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실행함에 있어 리더십과 운영 관리의 효과를 평가한다.

교육표준청(Ofsted)은 현장관찰을 통한 점검 외에도 이전 점검결과보고서와 자체점검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의 특징과 장단점 등을 파악하고, 교육표준청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는 학부모 의견란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확인한다.

2) 뉴질랜드

영유아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지표는 영유아의 긍정적인 학습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을 제시한 것이다. 지표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높은 수준의 질이 성취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도와준다. 둘째, 질의 수준 자체를 표상할 수 없으므로 질을 보여주는 지표 역할을 한다. 셋째,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입증될 수 있는 표현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는 요구사항(requirement)이 아니기 때문에 유아교육·보육기관이 지표의 모든 항목을 성취했음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

흥미로운 점은 뉴질랜드에서 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뉴질랜드 교육평가청의 지표는 각 지표당 성취 여부를 알아보는 체크리스트의 기능을 하기 보다는 기관이나 평가자가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교육평가청이 지표를 ‘자원(resources)’이라고 표현한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지표는 교육평가청이 기관을 평가하는 내용을 분명히 하고 기관의 자체평가를 도와주기도 한다.

라. 결과제시 및 활용

1) 영국

영국에서는 평가 후 평가자가 기관에 등급을 매기게 되는데 주로 고려하는 3가지는 다양한 영유아의 요구 충족, 기관의 영유아 웰빙을 위한 지원, 기관의 리더십과 관리다. 이를 바탕으로 4가지 척도, 매우 뛰어남(outstanding), 좋음(good), 개선을 요구함(requires improvement), 부적합함(inadequate)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다. 평가자는 평가자의 지침서에 정해져 있는 등급별 요건을 보고 등급을 결정한다.

평가보고서에 대한 피드백회의 후 문제가 없다면 교육표준청 사이트에 10일 내 공지된다. 만약 평가결과가 ‘부적합함’인 경우에는 평가보고서가 25일 이내 공지되며 강제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관이 속한 지방자치체에 부적합하다고 평가된 기관이 있음을 알린다. 이러한 결과는 만 2, 3, 4세 영유아를 위한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적합함’ 결과는 해당 시설이 영유아의 보호와 학습에 대해 부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것이 영유아에게 심각한 위해가 될 때 부여되며 ‘부적합함’ 등급을 받은 시설은 교육표준청으로부터 최소 3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위한 방문이 이루어지며 매 방문시마다 모니터링에 대한 보고서가 만들어진다. 또한 시정 통보를 받고도 해당 시설이 개선되지 않을 시에 교육표준청은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요구받는다. 이후 재점검 시에도 ‘부적합’으로 나타나는 경우 교육표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한편 등록 취소 등 법적 조치를 결정하거나 영유아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거나 개선이 보이지 않을 때, 등록 허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사안이 심각할 때에 조사관은 준법감시, 조사, 집행팀(Compliance,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team: CIE팀)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2)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 기관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 평가시기를 결정하고, 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은 교육부의 개입이 들어간다. 특징적인 것은 다음 기관 평가 시기가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으로 이는 질 높은 기관에 대한 하나의 긍정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으며, 평가

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약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평가 결과는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영유아의 긍정적인 학습 성과를 장려하는 데 아주 좋은 기관(very well placed)인 경우 4년 내, 좋은 기관(well placed)이라고 평가되었을 때 3년 내,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requires further development) 평가되었을 때 2년 내로 평가시기가 각각 다르게 주어진다. 반면에 좋은 기관이 아닌 것으로(not well placed) 평가되었을 때는 교육부와의 협의가 요구되며 보통 시정사항을 기관에 요구하여 시정하게끔 하고, 이러한 요구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장이 바뀌거나 기관을 폐쇄할 수 있으나 거의 보기 힘든 사례다.

마. 평가자 자격 및 관리

1) 영국

영국 영유아기관 점검의 왕실 책임조사관(HMCI, Her Majesty's Chief Inspector)과 왕실 조사관(HMI, Her Majesty's Inspector)은 영국 왕실과 의회에서 임명하여 교육평가청에 소속된다. 이들은 점검과 함께 인가 업무도 함께 담당하며, 이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인가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만큼 조사관의 전문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점검에 활용되는 지표나 결과 보고서 제시 방식 등도 영국 기관 대상 점검 조사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 영유아기관 점검을 담당하는 조사관은 왕

〈표 3〉 영유아기관 조사관 교육훈련 내용

교육일	세션	(분)	내용
1	1	(35)	교육표준청의 역할
	2	(90)	Early years settings 인가 개요
	3	(45)	Childcare Register 인가를 위한 점검 방법
	4	(110)	증거 수집, 기록, 측정
2	5	(210)	교사의 교습 질과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 측정
	6	(120)	교수·학습 질과 영유아 복지 평가
	7	(50)	개선사항 작성
3	8	(150)	리더쉽과 운영관리 점검
	9	(15)	최종 점수 산출 기준
	10	(60)	피드백 제공
	11	(90)	보고서 작성

출처: Ofsted(2014). Inspecting early years providers: Training for new early childhood regulatory inspectors (pp.1-2)

실조사관과 영유아기관만을 담당하는 영유아기 평가자(Early Years Inspector)로 나누어진다. 왕실조사관은 교육표준청에서 직접 채용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영유아기 평가자는 위탁 업체(Inspection Service Providers)에서 관리하며 고용된 형태 또는 프리랜서 형태가 있다.

왕실조사관은 사회적 돌봄, 교육,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의 세 분야로 나누어진다. 유아학교는 교육 분야에 속하며 유아학교, 초중등학교 등의 학교점검을 담당하며, 이에 따라 요구하는 자격 요건이 학령기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학사 학위 소지자여야 하며, 교사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 기본적 자격 요건 외에 교육 분야에서 5년 이상의 대표자 경력과 교육현장 및 정책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 그리고 해당 업무를 실행함에 있어 필요한 가설설정 및 문제제기, 학습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상황에 따라 전환할 수 있는 능력, 교육평가청의 가치에 맞고, 정확하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 파트너십 등의 역량

을 필요로 한다. 또한 결과 보고, 관계 형성 및 의사소통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왕실조사관의 선발은 자격 조건 확인 및 두 번에 걸친 측정 및 인터뷰를 통해 선발한다.

영유아기 평가자 자격은 왕실조사관의 선발 자격과 유사하다. 위탁업체 중 하나인 Tribal의 영유아 서비스 조사관 선발 조건을 보면 학사 학위와 영유아교육 분야 자격을 소지한 자이어야 하고, 영유아기 기본교육과정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유아교육 및 보육, 경영, 자문, 점검 관련 업무 경력, 평가 업무 경력 등을 요구한다.

선발된 조사관은 교육표준청에서 주관하는 교육 훈련 과정을 거친다. 영유아기 평가자 교육 훈련의 경우 3일 동안 11개 세션에 걸쳐 교육표준청의 역할, 인가 업무와 관련 점검 절차 및 자료 수집, 영역별 점검 기준, 보고서 작성 방법을 배우게 된다(〈표 3〉 참조). 교육은 상세한 설명과 함께 상황별 시나리오를 제시하거나 퀴즈 등을 통해 이해를 돕는다.

2)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는 교육평가청이 모든 학교와 유아교육기관의 질을 평가하고 있다. 교육평가청에서 평가하는 기관의 수준이나 형태가 다양하지만 기관에 따라 평가자가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다. 즉, 유아교육기관을 평가하는 사람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함께 평가하며 유아교육기관을 평가하는 자가 꼭 유아교육이나 관련 학과를 전공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 평가자는 현장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기관 평가에 관심을 가지고 평가자로 이직을 하고 있다. 평가자가 교육관련 전공자인 경우라면 기관 평가를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꼭 교육관련 전공자가 아니어도 평가자가 될 수 있다.

2013/14년도에 평가자를 위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학습개발(Professional Learning and Development)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신규 평가자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에 따라 다른 평가자가 일관성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자가 유연하고 수용적인 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마오리족이나 태평양족의 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 기관을 평가하는 자는 마오리족, 태평양족의 문화를 이해하고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채용하고 있다. 전체 평가자의 70%는 여성이며 20%가 마오리족 출신이며 장애인이 7%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때(ERO annual report, 2014)⁶⁾ 평가자 내에서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ERO(2014). Annual report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14.

3.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보육 기관평가 발전을 위한 시사점

가. 기관 평가·평가인증에 대한 시각 측면

기관 평가·평가인증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기관이나 교사를 평가하여 줄 세우기식이 아니라 기관과 교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점차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의 물리적 환경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지고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기관 평가·평가인증을 바라보는 시각이 ‘평가(인증)’에서 ‘지원’으로 승화되어 기관과 교사의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평가인증 준비를 도와주는 컨설팅 인력을 늘리고, 평가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평가 시 유아교육·보육의 실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나. 기관 평가·평가인증 운영 측면

평가·평가인증 체계 통합, 독립적인 평가 기구 설립, 전문적인 평가자 양성 및 평가·평가인증 의무화를 제안한다. 정부차원에서는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의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합하여 기관마다 다른 지표와 방법을 통해 평가받는 방식을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기관을 이용하는 수요자가 보다 용이하게 기관

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와 함께 독립적인 평가기구를 구축하여 평가자의 전문적인 양성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관 평가를 의무화하여 모든 기관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나 기관의 맥락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다. 기관 평가·평가인증 지표 측면

지표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다 넓혀 지표가 성취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내용이 아니라 기관의 맥락을 반영하여 지표가 이해될 수 있도록 지표의 해석이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필수지표 및 선택지표로 구분하여 기관에 적용해볼 수도 있다.

라. 기관 평가·평가인증 방법 측면

자체평가의 역할 강화, 평가자와 기관 간 의사소통 강화, 현장의 원장(감), 교사와의 면담 활성화를 제안한다. 자체평가의 내용을 강화하여 평가·평가인증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기관을 평가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교사에게 자기성찰의 기회가 되어 질 개선을 위한 역량을 스스로 제고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외부의 수동적인 평가에 의존하다 보면 평가 당시에만 보여주기식의 결과를 양산할 뿐이다. 평가방법 측면에서는 평가자와 기관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평가·평가인증을 준비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이들과의 대화 또한 평가의 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마. 기관 평가·평가인증 결과 활용 측면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 현 상황에서는 재정적 연계보다 자세하고 다양한 결과내용(강점, 약점, 특징 등)을 공개하고 다음 평가시기를 결정하거나 연수나 컨설팅과 연계하는 등 보다 생산적인 방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평가사 후 관리를 강화하여 평가결과가 긍정적인 기관에는 보다 자율성을 부여하고, 일정 수준의 질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관을 대상으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전문가 혹은 정부가 개입하여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기관 대상 평가·평가인증을 위해 정부와 현장 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는 평가·평가인증이 공적자금의 투입이라는 이유로 기관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고자 하는 평가로 인식될 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관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목적임을 인지하여 기관 평가가 영유아와 교직원, 부모 모두의 삶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